

첫째, 법 제12조에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있어서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의 운송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월 정기 금액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 별표 4가 있습니다. 그 주차요금을 주·야 합한 금액의 30%를 할증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둘째는 제13조 중에 민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를 최초 30분이 초과했을 경우 당초 15분 단위로 계산토록 하였던 것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10분 단위로 축소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셋째로 조례 제2조 제1항의 별표 1과 같이 개정하여 거주자 주차 우선제를 시행하였을 경우 주민들이 주간에 주차를 하게 되면 3만원, 야간에 주차를 하면 2만원이라서 주·야간 주차를 하면 5만원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코자 마찬가지로 주·야간 1일 전일 주차시에는 4만원을 징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永登浦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의 주요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조례개정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구의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周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專門委員 俞載漢 專門委員 俞載漢입니다.

<參 照>

서울特別市永登浦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임시회의시 제정된 永登浦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와 서울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가 공영 및 민영주차장 운영에 관련한 주차시간을 조정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의 형평을 기하며 일관성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써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조례 제12조에 노외주차장 월 정기권 발급에 따른 요금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두번째 조례 제13조는 민영주차장의 노외주차 시간 단위를 최초 단위 30

분 이내로 하고 초과할 때마다 15분 단위로 하던 것을 10분 단위로 세분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안으로 분쟁의 소지를 줄인다고 보아집니다.

세번째,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이 3, 4급지가 1, 2급지와는 격차가 크므로 재조정하여 큰 격차 폭을 줄여 형평을 기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 제1항 관련)

(현행)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2시간까지		초과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권	1회 주차		월정기권		
	1구회 최초 30분	1구회 15분	1구회 15분	주간		야간	1구회 최초 30분	1구회 15분	주간	야간
1급지	2천원	1천원	2천원	5천원			1천 600원	800원	20만원	10만원
2급지	1천원	500원	1천원	4천원			1천원	500원	12만원	6만원
3급지	400원	200원		3천원			300원	150원	4만원	4만원
4급지	200원	100원		2천원	4만원	4만원	200원	100원	2만원	2만원

(개정)

3급지	400원	200원	200원	3천원	5만원		300원	150원	4만원	2만원
4급지	200원	100원	100원	2천원	3만원	2만원	200원	100원	3만원	2만원

이상으로 서울特別市永登浦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周榮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李重植 委員님.

○李重植 委員 李重植 委員입니다.

이 개정안에 있어서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4급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지요. 그런데 인상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크게 인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15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어도 요금에는 변화가 없다는 문제, 또 한가지 문제는 월 정기권 금액이 벌써 주간에 2만원 하던 것을 3만원으로 올랐고 그리고 야간에 2만원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러한 노외 주차장이라든가 노상 주차장의 요금을 큰 폭으로 꼭 상승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